

대신대학교 학부 장학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본교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설치 및 구성) 장학금 지급방침에 관한 심의를 위해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본교 장학위원회는 본교 학과장 및 기획처장 및 총무처장으로 구성한다.
2. 학생처장이 위원장이 된다.

제3조 (업무관장)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은 학생처장이 관장하며 학생과에서 통괄한다.

제4조 (장학금 신청) 장학금의 신청은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한다.(정해진 기간 내 첨부서류 업로드 포함)

제5조 (장학생 선발) 장학생의 선발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

제6조 (종류) 본교의 장학금은 신입생고교내신성적우수장학금, 대신사랑장학금, 임원장학금, 보훈장학금, 군종장학금, 만학도장학금, 근로장학금, 가족장학금, 복지장학금, 복지장학금(장애학생), 외국인유학생, 외부장학금, 교직원 및 직계, 교직원 형제자매, 행정조교직계, 추천장학금, 소망장학금, 창업장학금, 교직원추천장학금, 음악경연대회, 새터민장학금 등이 있다.(개정.2023.8.11.)

제7조 (지급기준) 장학금 운영규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탑재된 교내 각종 장학금 내역(학부)에 따라 지급한다.

제8조 (근로장학금) 근로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

제 1 항 (목적) 본교 재학생들에게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며 이를 통하여 학교를 위한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.

제 2 항 (구분) 근로는 지정근로와 수시근로로 구분한다.

① 지정근로

교내 각 부서에 지정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를 지정근로라 한다.

② 수시근로

교내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할시 배정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를 말한다.

제 3 항 (근로신청) 근로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매 학기 공고기간에 근로 신청서를 학생과
에 제출해야 한다.

제 4 항 (선발 및 배정) 근로장학생의 선발 및 배정은 아래와 같다.

① 선발

1. 중징계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.
2. 지정근로자인 경우 사무능력이 뛰어난 자를 우선 선발한다.
3.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상급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.

② 배정

1. 근로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부처장은 지정 및 수시 근로 소요 인원을 학생과로 의
뢰한다.

2. 학생과는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각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배정한다.

제 5 항 (근로시간) 근로시간은 1일 4시간을 기준 하여 주당 20시간까지 하며 부득이 근
로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학생과와 사전에 협의 후 시행한다.

제 6 항 (재원) 교내장학금 재원에서 지급한다.

제 7 항 (근로장학금기준금액) 당해 지정 또는 수시 근로장학금기준금액은 시간당 또는
일당으로 본 장학위원회에서 책정한다.

제 8 항 (근로장학금지급) ① 지정근로인 경우 매월말 해당 부처장의 확인으로 학생과에
서 품의 후 익월 중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수시 근로자인 경우 학기말 해당 부처장의 확인으로 학생과에서 품의 후 당 학
기말에 지급한다.

제 9 항 (근로장학생 교체)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근로 실적이 저조한 자 또는 기타의
사유로 부처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장학생을 교체한다.

제13조 (개정) 본 규정의 개정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4조 (준칙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199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199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199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세칙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세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세칙은 2023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